

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- 69 호

『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「남원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8일

남 원 시 의 회 의 장



##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: 이미선 의원

### 1. 개정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7항에 따라 「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을 구체화하여 더욱 쾌적한 금연 및 정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원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띄어쓰기 등 맞춤법 수정

나. 근거법령 표시 및 금연구역 지정 장소의 추가(제4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8. 28. ~ 2023. 9. 4 (7일간)
- 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#### **4. 의견제출**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9월 4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

다. 보내는 곳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 
자치행정위원회

라. 문의 및 접수: 자치행정위원회(전화 : 063-620-5046)

마. 기재내용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 성명(기관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붙임 조례안 1부.